

선	기관의 장
람	

제1436호

2026년 9월 1일(화)

- 차 례 -

고시

강화군 고시 제2026-187호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1

공고

강화군 공고 제2026-1303호

2027년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계획

- 11

강화군 공고 제2026-1308호

2026년 8월 취득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
- 21

고 시

강화군 고시 제2026-187호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 및
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자연취락지구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강화군청(도시개발과, ☎032-930-3807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6. 9. 1.

강 화 군 수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취지

- 녹지지역 내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취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함.

2. 위치

- 강화읍(국화리, 남산리, 옥림리), 길상면(선두리, 온수리), 내가면(고천리), 선원면(선행리 일원)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결정(변경)조서 및 사유서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연번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취락지구 제한내용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 소계							증1,106,441	1,106,441		
신설	1	국화5지구	자연취락지구	강화읍 국화리 498번 지 일원	건폐율50%	-	증89,220	89,220	-	-
	2	남산4지구	자연취락지구	강화읍 남산리 292번 지일원	건폐율50%	-	증187,260	187,260	-	-
	3	남산5지구	자연취락지구	강화읍 남산리 450번 지일원	건폐율50%	-	증179,098	179,098	-	-
	4	옥림1지구	자연취락지구	강화읍 옥림리 산 118-1번지일원	건폐율50%	-	증43,445	43,445	-	-
	5	옥림2지구	자연취락지구	강화읍 옥림리 1041-2번지 일원	건폐율50%	-	증31,296	31,296	-	-
	6	선두1지구	자연취락지구	길상면 선두리 416-7 번지일원	건폐율50%	-	증80,148	80,148	-	-
	7	온수2지구	자연취락지구	길상면 온수리 산 58-2번지일원	건폐율50%	-	증123,277	123,277	-	-
	8	고천1지구	자연취락지구	내가면 고천리 1116 번지 일원	건폐율50%	-	증199,687	199,687	-	-
	8	고천2지구	자연취락지구	내가면 고천리 1256-5번지 일원	건폐율50%	-	증65,353	65,353	-	-
	10	선행1지구	자연취락지구	선원면 선행리 67-39 번지 일원	건폐율50%	-	증107,657	107,657	-	-
변경 소계						167,719	증27,289	195,008		
변경	11	남산3지구	자연취락지구	강화읍 남산리 535-1 번지일원	건폐율50%	167,719	증27,289	195,008	2020. 1.3	확장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사유서

지구명	내 용	결정(변경) 사유
국화5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유도
남산4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유도
남산5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유도
옥림1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유도
옥림2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유도
선두1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유도
온수2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용도지역 불일치 조정지역 대체 지구지정
고천1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용도지역 불일치 조정지역 대체 지구지정
고천2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용도지역 불일치 조정지역 대체 지구지정
선행1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유도
남산3지구	자연취락지구 변경 [면적] 증, 26,525㎡]	· 기존 자연취락지구 연접한 동일생활권 내 지역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 정비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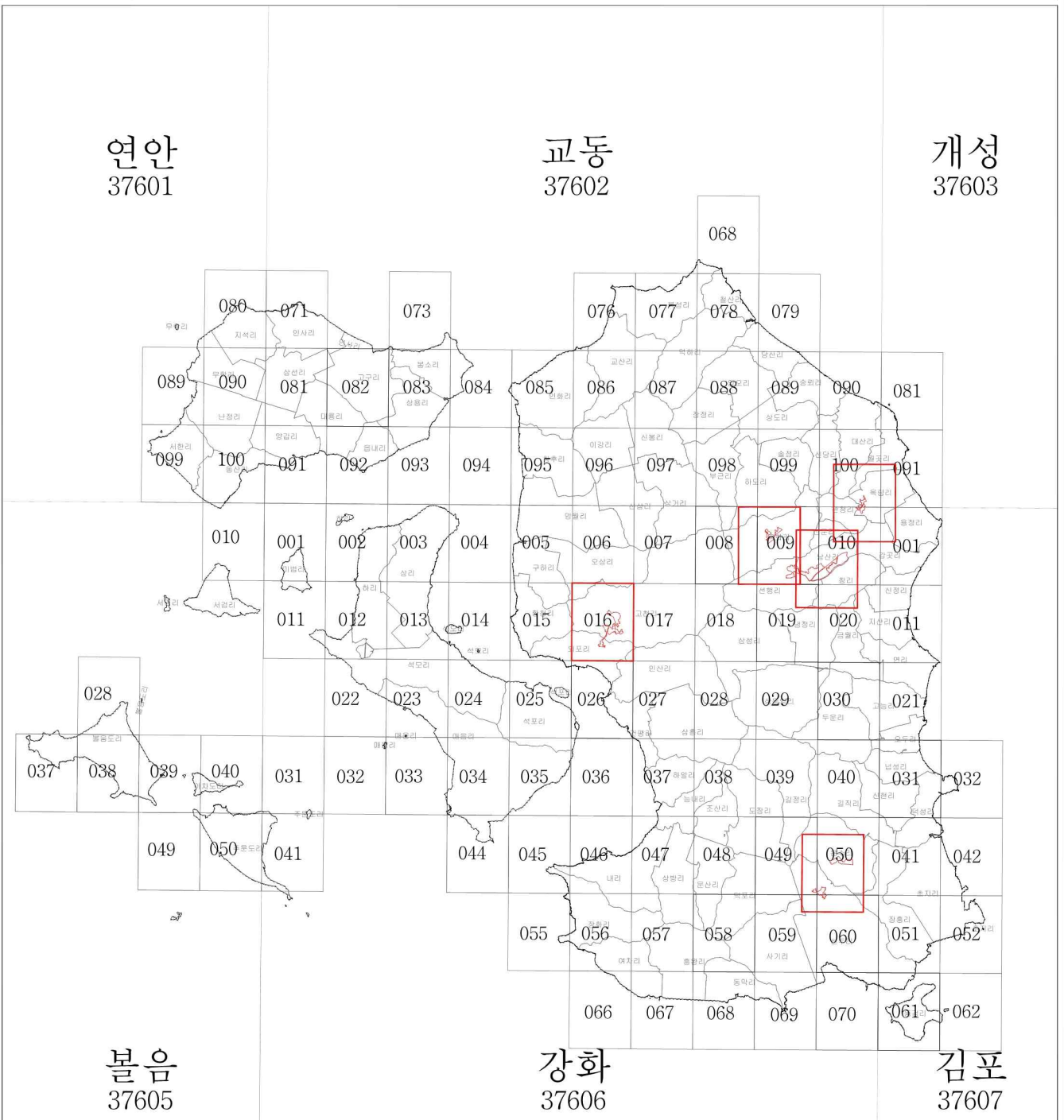
2024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

2026. 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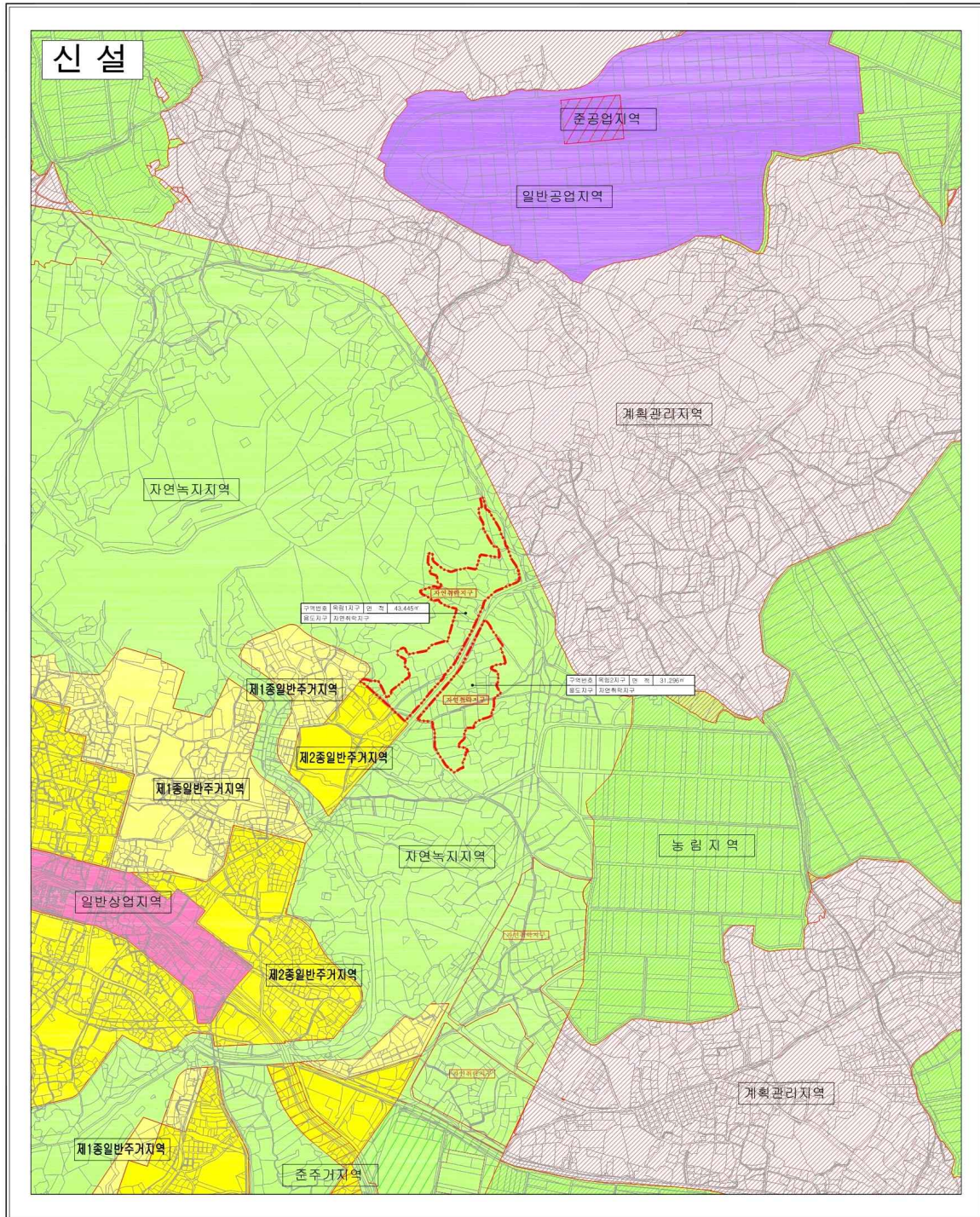


강 화 군

■ 총괄도



강화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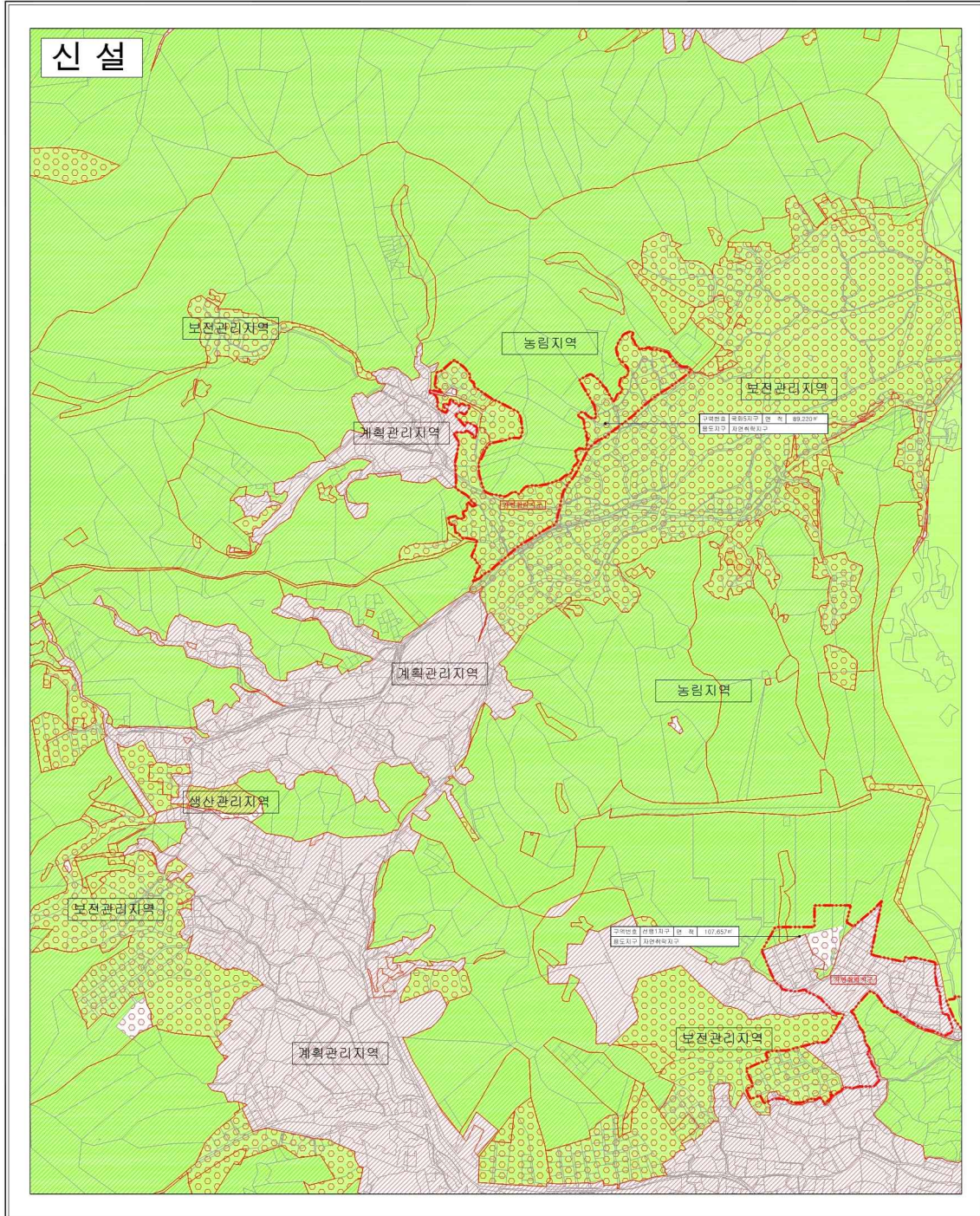


구분	일반권자			결정권자		
	작성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	3차 확인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속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
직위	대표이사	-	도시정책팀장	도시개발과장	-	도시정책팀장
직명	-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	지방행정사무관	지방시설주사	지방행정사무관
성명	이준모	남기원	조성규	김은희	이경애	최재원
확인인						

※ 금회 결정(변경)에 한하여 유효함.

범례		강화군 고시 제 2026- 호			교동	교동	개성
대형어구		서기 2026년 월 일			089	090	081
자연녹지지역					교동	교동	개성
자연녹지지역					099	100	091
자연녹지지역					강화	교동	김포
자연녹지지역					009	010	001

강화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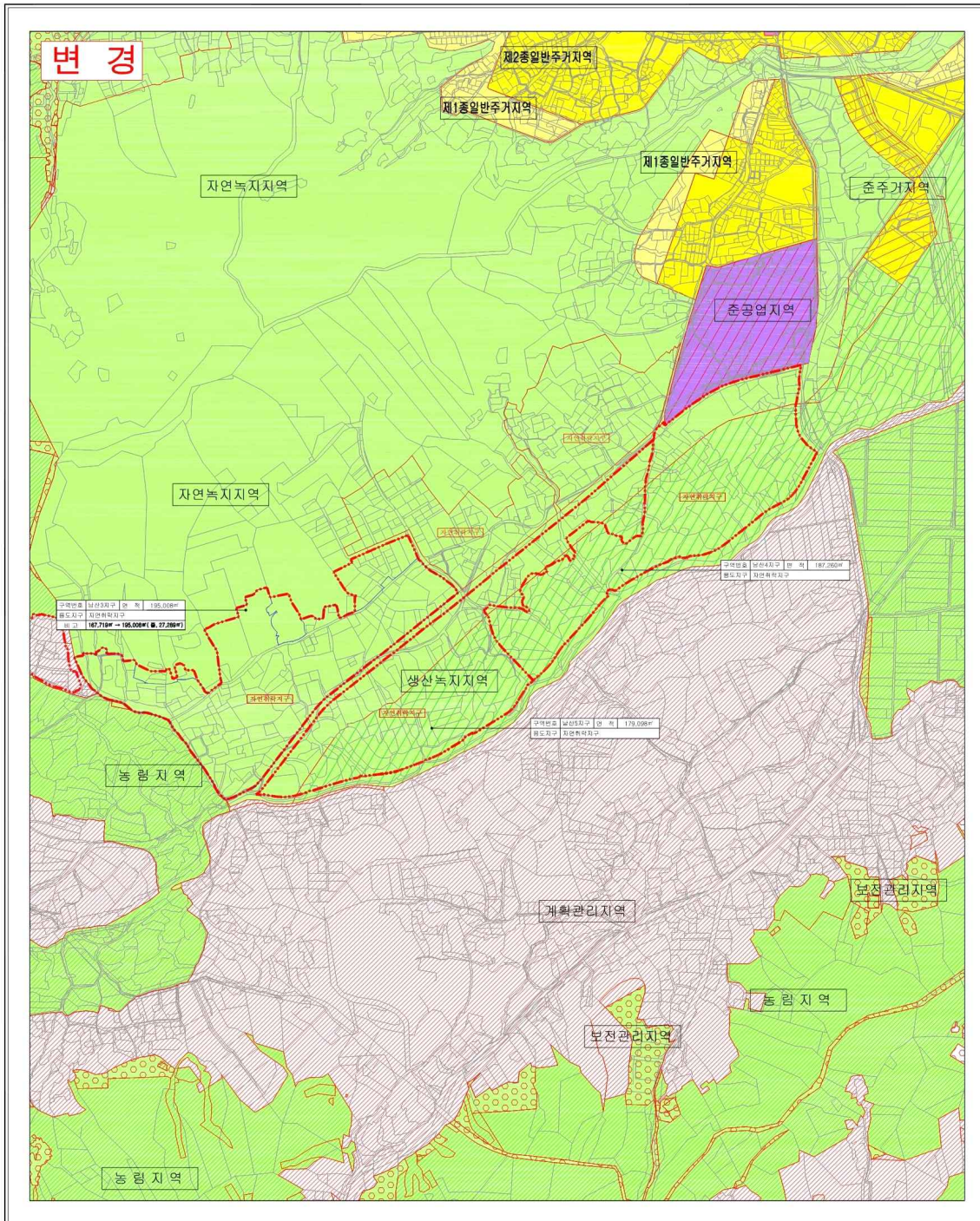
구 분	입안권자				결정권자		
	작성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	3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	3차 확인자
소 속	경안엔지니어링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
직 위	대표이사	-	도시정책팀장	도시개발과장	-	도시정책팀장	도시개발과장
직 명	-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	지방행정사무관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주사	지방행정사무관
성 명	이 준 모	남 기 현	조 성 규	김 은 희	이 경 애	최 재 원	차 은 석
확인인							

※ 금회 결정(변경)에 한하여 유효함.

범 례	
대상지 구역계	보전관리지역
자연취락지역	농림지역
계획관리지역	생산관리지역

강화군 고시 제 2026- 호		
서기 2026년 월 일		
교동 098	교동 099	교동 100
강화 008	강화 009	강화 010
강화 018	강화 019	강화 020

강화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결정(변경)도



구 분	입안권자			결정권자		
	작성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	3차 확인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 속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
직 위	대표이사	-	도시계획팀장	도시계획팀장	-	도시계획팀장
직 명	-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	지방행정사무관	지방시설주사	지방행정사무관
성 명	이준모	남기원	조성규	김은희	이경애	최재원
확인인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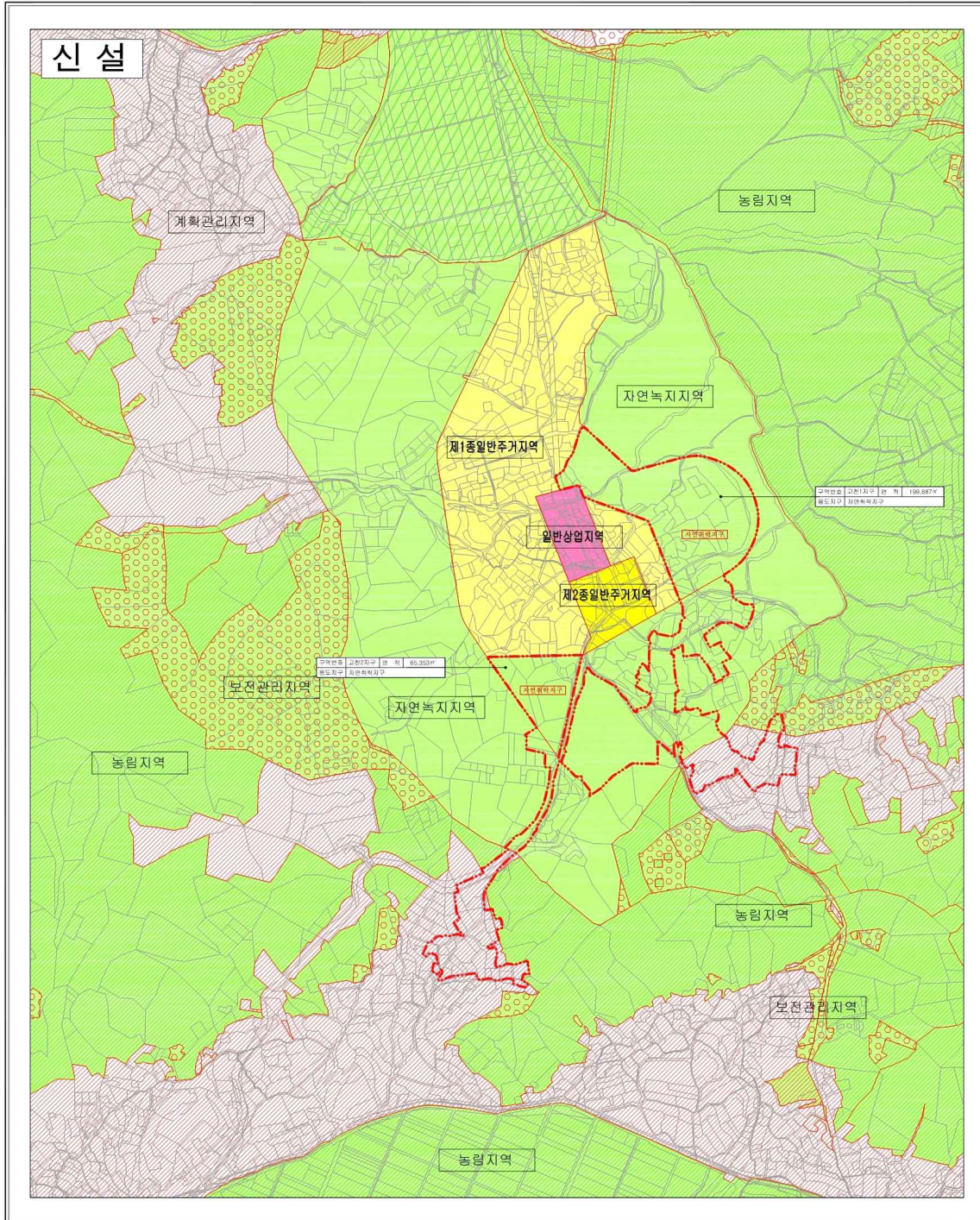
범 례	
대성지구지역	생산녹지지역
제1종일반주거지역	계획관리지역
제2종일반주거지역	생산관리지역
준주거지역	보전관리지역
준공업지역	농림지역
자연녹지지역	

강화군 고시 제 2026- 호	
서기 2026년 월 일	
교동 099	교동 100
강화 009	강화 010
강화 019	강화 020

교동 099	교동 100	개성 091
강화 009	강화 010	김포 001
강화 019	강화 020	김포 011

※ 금회 결정(변경)에 한하여 유효함.

강화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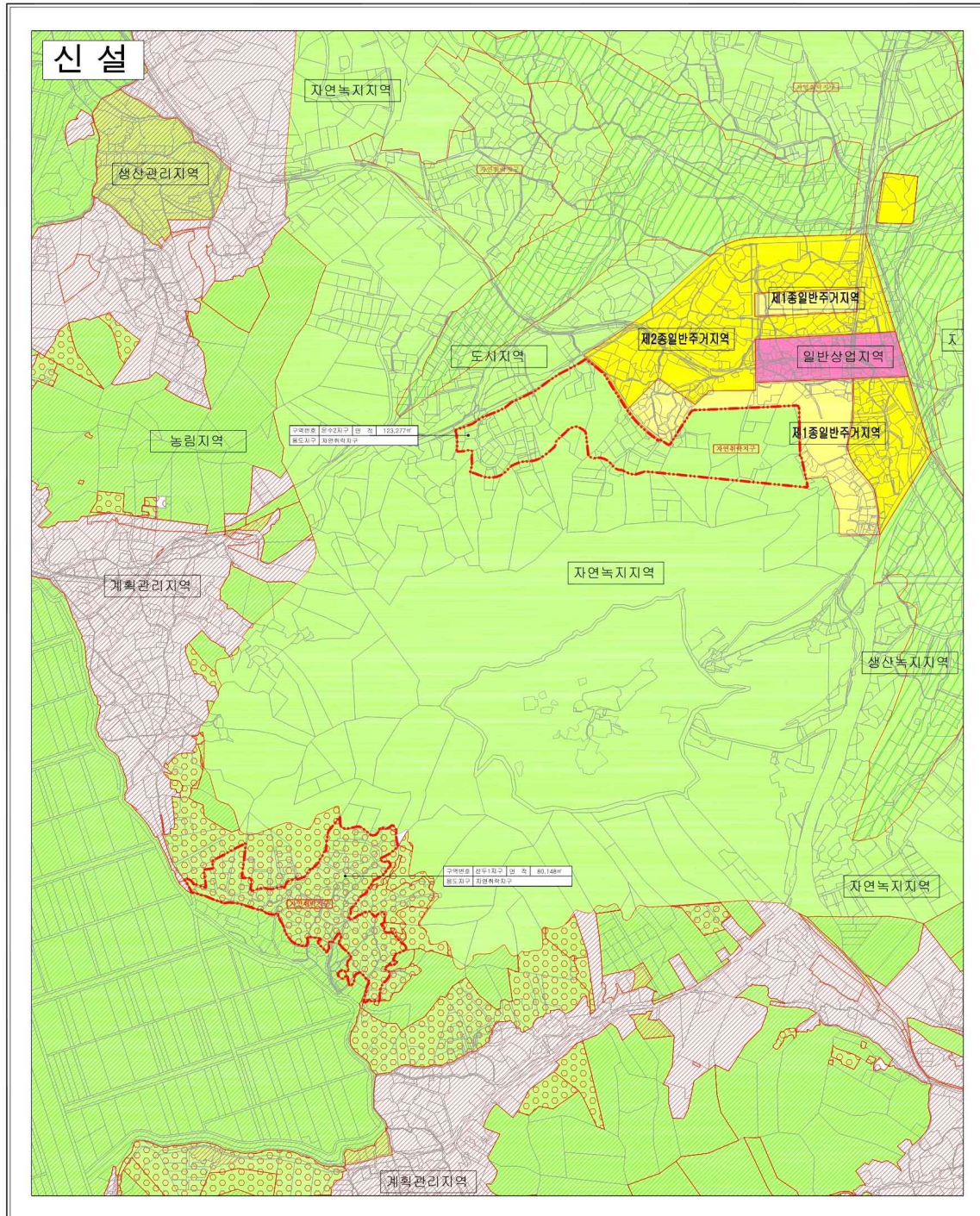
구분	입안권자			결정권자		
	작성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	3차 확인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속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
직위	대표이사	-	도시정책팀장	도시개발과장	-	도시정책팀장
의명	-	지방시실주사보	지방시실주사	지방행정사무관	지방시실주사	지방시실주사
성명	이준모	남기현	조성규	김은희	이경애	최재원
확인인						

범례	
대안지구	생산업지
제1종일반주거지역	계획관리지역
제2종일반주거지역	생산업지
일반상업지역	도시관리지역
자연녹지지역	농림지역

강화군 도시 제 2026- 호		강화 005	강화 006	강화 007
서기 2026년 월 일		강화 015	강화 016	강화 017
SCALE 1:5,000		강화 025	강화 026	강화 027

※ 금회 결정(변경)에 한하여 유효함.

강화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결정(변경)도



구분	임원관료			결정권자			
	작성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	3차 확인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	3차 확인자
소속	경안텔레비전		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	강화군청 도시개발과
위 위	대표이사	—	도시정원담당	도시개발부장	—	도시정원담당	도시개발부장
의 명	—	지방시설주사부	지방시설주사	지방행정사무관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주사	지방행정사무관
성 명	이은모	남기현	조성규	김은희	이경애	최현정	차은석
확인인							

범례			
	대성지구역계		생산농지지역
	제1종일반반우지지역		계획관리지역
	제2종일반반우지지역		생산관리지역
	준주거지역		보전관리지역
	준공업지역		농림지역
	자연녹지지역		

강화군 고시 제 2026- 호
서기 2026년 월 일

SCALE 1:5,000
0 50 100 200 500m



강화 039	강화 040	김포 031
강화 049	강화 050	김포 041
강화 059	강화 060	김포 051

※ 금회 결정(변경)에 한하여 유효함.

공 고

강화군 공고 제2026-1303호

2027년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계획 공고

지방보조금법 제6조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27년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31.

강 화 군 수

① 신청자격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」 및 「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강화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강화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

② 지원대상

- 강화군에 소재하면서 최근 1년 이상 지속적인 창작 등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
- 비영리단체로 개별법령,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
- 보조금 지원 가능사업
 - －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
 - － 지역전통문화 전승 및 활동을 위한 사업
 - －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군의 정책상 필요에 따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

③ 사업추진기간: 2027. 1. 1. ~ 12. 31. 기간 수행하는 사업**④ 지원범위**

-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
- 지원 금액은 신청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의 규모 및

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(타당성, 내용, 파급효과 등 감안)

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지원
- 신청단체의 회칙이나 정관 및 설립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원
- 지원 금액은 추진사업 품목별 기준단가를 적용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

※ 자부담률

- 기존지원 단체: 기존 자부담 비율 이상 자부담 원칙
- 신규지원 단체: 신청 보조금의 10% 이상 자부담 원칙

※ 간담회비, 다과비, 식비는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하며, 사전 협의 및 승인하에 편성 가능

※ 강화미술관 대관 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비로 편성(2026년부터 유료 전환)

5] 지원대상 제외 단체

- 동일 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
-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
-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간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- 다른 기관, 단체로부터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
-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,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친목 도모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불법시위를 주최,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인 경우

6] 신청서 접수

- 신청기간: 2026. 9. 1.(화) ~ 9. 16.(수) ※신청 마감일 18:00 도착분
- 신청방법: 방문접수(강화군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)

-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(정관·회칙, 회원명부 등),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문화예술 활동 실적자료 1부 등
- 문 의: 강화군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(032-930-3622)

7 심의 및 결과 통보

- 지원대상 단체·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의 심의는 강화군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
- 심의내용: 시책 연관성, 사업 적정성, 공익성, 주민 수혜도, 전년도 운용 평가결과,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
-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: 2027년 1월 중(단체에 개별 통지)

8 기타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.
- 지방보조금의 교부·집행 및 정산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관련 지침에 따름.
-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된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,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
- 지방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관련 지침에 따름.

붙임 1. 지원신청서 1부.

2. 사업계획서 1부.

3. 단체소개서 및 회원명단 1부. 끝.

[참고자료]

예산 비목별 집행방법(공통기준)

예산비목	집행방법(기준)	비고
공통	○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①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(실행계획서)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내부품의서를 작성, 결재를 득한 후 ②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<u>계약상대방의 견적서(100만원 이상 복수견적서)</u>를 받아 지출원인행위(계약)를 체결하고 ③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(제공)받아 검수를 필한 뒤 ④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체크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※ 강사료,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※ 각종 행사 개최 시, 개최결과 첨부	
회의비	○ 회의참석수당은 심의의결위,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며,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○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,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※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	·회의록 ·참석확인서 ·수당내역서
원고료	○ 강의교재, 각종 세미나·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, 책자발간 원고 등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 ○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12,000원으로 하며, 강의시간 1시간 당 A4원고 6매 이내로 제한(PPT원고의 경우 2장당 A4용지 1매로 인정) ※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지급단가의 50% 지급 가능 ○ 원고료는 금액을 불문하고 반드시 계좌입금 원칙. ○ 1건당 지급액이 250,000원 초과일 경우, 강사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	
인쇄비	○ 사업 수행 시 교재, 성과책자 등 인쇄물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스(조판비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)를 사용하며 경인쇄 권장 ○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○ 책자형태로 배포 시 배포계획서 수립 제출(우편영수증/수령인 명단 등) ※ 보조금 감사 시 인쇄비 과다 집행사례 지적 빈번, 제작 시 주의 요망	·배포계획서
식비	○ 일상적인 소규모(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·참석자) 식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9,000원(간식비 1인 1식 3,000원) 단가기준 적용 지출	
교통비	○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 가능, 실비 지급 원칙 ○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, 출·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	

강사료	○ 강사의 인적사항, 출강시간,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토록하고, 계좌입금 조치 ※ 단체 대표자·임직원(회원)에게 인건비성 사례비(강사,연출,안무,진행료 등) 집행불가 ※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하여 지급	·강의확인서 ·강사자격 확인자료 ·강사료지급 내역서 ·강의유인물 ,강의사진
단순인건비	○ 사업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○ 고용 전 ‘고용목적, 기간, 신상명세“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	·업무일지 ·고용품의
영수증 처 리	○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, 금전등록기영수증,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,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(간이)영수증 인정 ※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: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	

강화군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

단 체 현 황	지방보조사업자 (단체명)			신 청 자		
	소 재 지 (도로명 주소)			실무담당자 (연 락 처)	(- -)	
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연 락 처		
사 업 내 용	사업명			강화군 소관부서		
	사업목적					
	사업기간	2027. . . ~ 2027. . .	사업장소			참여 (수혜)인원 명
	총사업비		천원	지방보조금	천원(%)	
				자기자금 부담액	천원(%)	

「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.

2026. . .
신청자(단체장): 인(직인)

1. 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.
2. 단체소개서 1부.
3.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
- 단체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: 강화군 소재지 확인용
- 개인의 경우,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): 강화군 거주 확인용

지출 항목별 산출내역	사업명	지출항 목	산출기초 (단위: 원)		사업비 (단위: 천원)		
				합 계	보조금	자부담	
	합 계						
	소 계						
	인건비	(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구분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작성)					
	사업비						
자부담 확보계획 (천원)	구 분	자부담액	자부담 확보방법 (구체적 작성)				
	합 계						
			(예시) 자체수입, 회비, 기부금 등				
최근 3년간 지원 실적 (천원)	구 분	사 업 명	보조금 수령액			비 고	
			계	보조금	자부담		
	2024년						
	2025년						
	2026년						
수입금 처리사항	○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될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(해당되는 경우만 작성) - 예상 수입금 : - 향후 처리 계획 :						
보조사업 기대효과	○						

단체소개서

단 체 명					
주 소	(도로명 주소) 인천광역시 강화군				
전화번호		E-mail			
지원근거 관계법령	○ 직접적인 지원근거 법령 또는 조례 작성: (예시) ○○○○법 제○조				
설립목적	○				
단체연혁	○ (최초 설립일 및 주요 변동사항 기재)				
단체구성	○ 상근직원 : 명 (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부장, 간사 등) ○ 등록회원 : 명				
최 근 공익활동 실 적	○ (최근 3년 이내 실적) ○				
2027년 주요사업 계획	○ ○				
2026년 주요사업 활동실적	사업명	사업내역		비 고	
		- 일시 - 장소 - 참여인원 - 집행금액 - 행사내용 등		사업성격 또는 일자 순 기재 관련 증빙자료 별지 첨부 (사진, 홍보물 등)	
2026년 보조금 지원현황 (천원)	사업명	보조금 수령액			비 고
		계	집행액	잔액	

단체 회원명단(직원포함)

연 번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비고(직위 등)

강화군 공고 제2026 - 1308호

공 시 송 달

성 명 : 조*상 외 6인
서 류 의 송 달 지 :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
서 류 의 명 칭 : 2026월 8월 취득세 고지서
서 류 의 내 용 : “붙임” 내역과 같음

위의 고지서를 2026년 8월에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납부기한을 2026년 9월 30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. 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강화군청 세무회계과(☎032-930-3309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일

강 화 군 수

공시송달 내역

(단위: 권, 원)

연번	세목	과세(문시)번호	납세자번호	납세지역	발송주소	과세물건	반송사유	분세	가산금	합계
7			합계					19,043,090	583,690	19,626,780
1	181581 취득세(부동산)	28710-101501-202606-2-310-000450	750430-1*****	조*상	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	토지+건물 선원면 창리 663번지	7기타	4,959,910	184,260	5,144,170
2	181581 취득세(부동산)	28710-101501-202606-2-320-000419	730519-2*****	정*주	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감화동로	건물 불문면 두물리	7기타	4,144,430	113,020	4,257,450
3	181581 취득세(부동산)	28710-101501-202606-2-370-000431	750920-1*****	이*현	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동대로715번길	토지+건물 하침면 신불리	7기타	3,684,370	134,450	3,818,820
4	181581 취득세(부동산)	28710-101501-202608-2-250-000698	940116-1*****	우*민	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침로3번	건물 감화읍 대사리	7기타	2,460,940	57,860	2,518,800
5	181581 취득세(부동산)	28710-101501-202608-2-310-000753	670428-2*****	양*순	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	토지 선원면 선동리	7기타	474,350	11,060	485,410
6	181581 취득세(부동산)	28710-101501-202608-2-330-000787	671122-1*****	조*원	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(하버뷰 2단지)	토지 감산면 선동리	7기타	2,233,110	55,900	2,289,010
7	181581 취득세(부동산)	28710-101501-202608-2-380-000784	770109-2*****	김*영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	토지 양사면 안화리	8 폐로부지	1,085,980	27,140	1,113,120